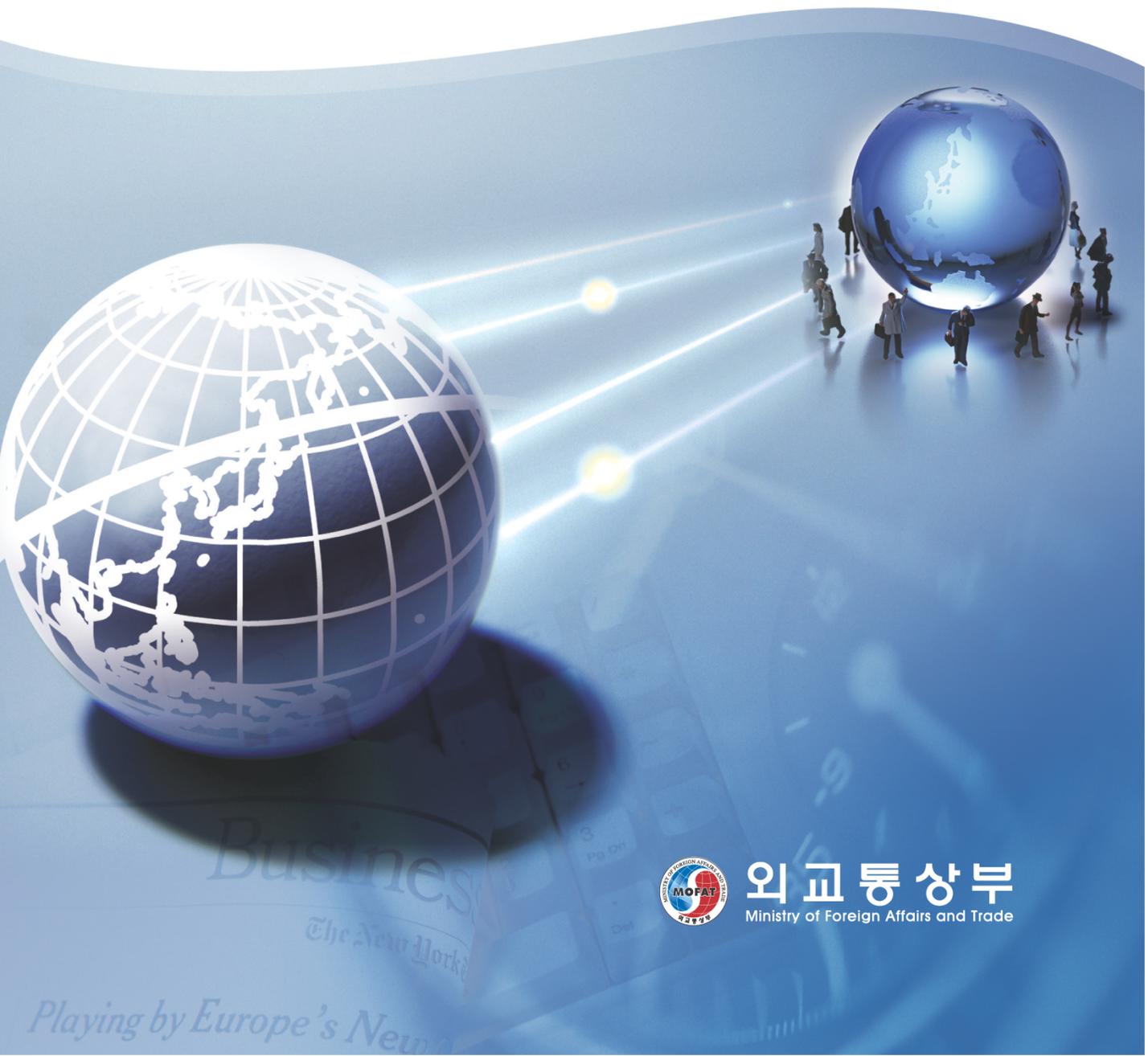


대한민국 공문서의 해외사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2007년 7월 14일부터 간편해집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2007. 6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Business
The New York
Playing by Europe's New

대한민국 공문서의 해외사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2007년 7월 14일부터 간편해집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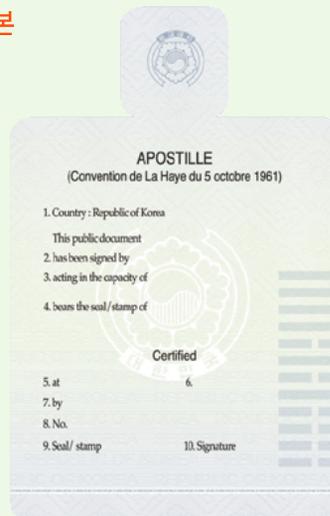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7.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Apostille

01.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 아포스티유를 이해하기 앞서 공문서의 해외 사용을 위한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 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 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통상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견본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개요**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발효시기** : 1961. 10. 5 헤이그에서 작성, 1965. 1. 24 발효
- **가입국 현황** : 미·영·불·독·일·중(홍콩, 마카오만 적용) 등 92개국 (2007. 5월 현재)
-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 7. 14

절차 비교

현재 절차	Apostille 발효 이후 절차
공문서발급 → 우리정부확인(필요시) → 주한공관 확인 →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공문서발급 → 외교통상부확인 →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02. 어떤 문서가 아포스티유 확인의 대상이 되나요?

-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포함)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급한 문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가 그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문서가 공증을 받을 경우 아포스티유의 발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부기관 발행문서** :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이 필요한 문서** :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국공립병원 발행문서는 정부 발행문서에 해당), 사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정부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

협약에 의한 APOSTILLE 확인서 양식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①)

3. acting in the capacity of (②)

4. bears the seal/stamp of (③)

Certified

5. at (④)

7. by (⑥)

8. No (⑦)

9. Seal/stamp (⑧)

6. (⑤)

10. Signature (⑨)

-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③ 문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 ⑥ Apostille 발급 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탬프, ⑨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03.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는? 그리고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외교통상부 별관 1 영사민원실 (코리안 리 빌딩 4층)



- **우편 발급 방법** : 신청서류 일체, 반송용 우표 및 봉투, 수수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외교통상부 별관 I Korean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에게 송부
문의전화 : 02) 2100-7500



04. 아포스티유 신청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외무부장관이행하는영사관계문서의확인사무수수료규칙에 의한 수수료

05.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서는 문서의 번역문이 필요합니까?

-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이 되는 문서는 우리 공문서입니다. 번역문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요구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할 국가에서 번역문을 필요로 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여야 불편이 예방된다고 하겠습니다.
- 번역 공증된 문서는 아포스티유 발급대상입니다.

06.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무엇을 심사하나요?

- 협약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발행된 문서의 날인된 관인 또는 서명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정부기관, 공증인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대조에 사용할 관인과 서명을 등록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07.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협약가입국은 어디 입니까?

보조자료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 : 2007. 5월 현재 92개국**

국 가	발효일 ⁴	발급기관 수 ⁶
Albania	2004-5-9	1
Argentina	1988-2-18	1
Australia	1995-3-16	1
Austria	1968-1-13	1
Belarus	1992-5-31	1
Belgium	1976-2-9	1
Bosnia and Herzegovina	1965-1-24	1
Bulgaria	2001-4-29	1
China, People' s Republic of		2
Croatia	1965-1-24	1
Cyprus	1973-4-30	1
Czech Republic	1999-3-16	1
Denmark	2006-12-29	1
Estonia	2001-9-30	1
Finland	1985-8-26	1
France	1965-1-24	1
Georgia	2007-5-14	1
Germany	1966-2-13	1
Greece	1985-5-18	1
Hungary	1973-1-18	1
Iceland	2004-11-27	1
Ireland	1999-3-9	1
Israel	1978-8-14	1
Italy	1978-2-11	1
Japan	1970-7-27	1
Korea, Republic of	2007-7-14	1
Latvia	1996-1-30	1
Lithuania	1997-7-19	1
Luxembourg	1979-6-3	1
Malta	1968-3-3	1
Mexico	1995-8-14	1
Monaco	2002-12-31	1

국 가	발효일 4	발급기관 수 6
Netherlands	1965-10-8	1
New Zealand	2001-11-22	1
Norway	1983-7-29	1
Panama	1991-8-4	1
Poland	2005-8-14	1
Portugal	1969-2-4	1
Romania	2001-3-16	1
Russian Federation	1992-5-31	1
Serbia	1965-1-24	1
Slovakia	2002-2-18	1
Slovenia	1965-1-24	1
South Africa	1995-4-30	1
Spain	1978-9-25	1
Suriname	1975-11-25	1
Sweden	1999-5-1	1
Switzerland	1973-3-11	1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1965-1-24	1
Turkey	1985-9-29	1
Ukraine	2003-12-22	1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965-1-24	1
United States of America	1981-10-15	1
Venezuela	1999-3-16	1
Andorra	1996-12-31	1
Antigua and Barbuda	1981-11-1	1
Armenia	1994-8-14	1
Azerbaijan	2005-3-2	1
Bahamas	1973-7-10	1
Barbados	1966-11-30	1
Belize	1993-4-11	1
Botswana	1966-9-30	1
Brunei Darussalam	1987-12-3	1
Colombia	2001-1-30	1
Cook Islands	2005-4-30	1
Dominica	1978-11-3	1
Ecuador	2005-4-2	1
El Salvador	1996-5-31	1
Fiji	1970-10-10	1

국 가	발효일 ⁴	발급기관 수 ⁶
Grenada	1974-2-7	1
Honduras	2004-9-30	1
India	2005-7-14	1
Kazakhstan	2001-1-30	1
Lesotho	1966-10-4	1
Liberia	1996-2-8	1
Liechtenstein	1972-9-17	1
Malawi	1967-12-2	1
Marshall Islands	1992-8-14	1
Mauritius	1968-3-12	1
Moldova, Republic of	2007-3-16	1
Montenegro	2006-6-3	
Namibia	2001-1-30	1
Niue	1999-3-2	1
Saint Kitts and Nevis	1994-12-14	1
Saint Lucia	2002-7-31	1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979-10-27	1
Samoa	1999-9-13	1
San Marino	1995-2-13	1
Seychelles	1979-3-31	1
Swaziland	1968-9-6	1
Tonga	1970-6-4	1
Trinidad and Tobago	2000-7-14	

08.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공문서의 국내 활용은?

- 외국공문서가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외의 우리 영사가 현지 문서를 확인하는 '주재국 문서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발효되는 7.14일부터는 협약가입국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협약가입국 발행 공문서 또는 공증 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협약가입국 이 아닌 국가 발행 공문서 및 공증 문서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 확인' 을 통해 국내에서 국내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외국문서의 국내 활용에 따른 문의는 전화 02) 2100-75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09.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영사정보 홈페이지인 www.0404.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전용 상담전화 2100-7500 이나 영사콜 센터 3210-040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0. 아포스티유 관련 Q&A

01. 질문: 아포스티유 확인서 란 무엇입니까?

답변: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한 국가의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인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제출되어야 하는 국가의 외교·영사기관이 해당 공문서 서명자의 자격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국가 주한공관 영사의 인증이 폐지되고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 예를 들면,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확인(Legalization)을 위해 미국대사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미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 국민의 유학 및 상사주재 등 장기체류가 많고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가 대부분 협약에 가입하고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제도로 인한 우리 국민의 편의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02. 질문: 외국 공문서 인증폐지가 모든 나라에 적용 됩니까?

답변: 아닙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만 적용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발행한 공문서나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공문서와 우리나라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주한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03. 질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92개국 입니다. (가입국가 명단 붙임 참조)

04. 질문: 아포스티유 제도를 시행하면 어떻게 편리 해지나요?

답변: 아포스티유를 시행하면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한 주한공관의 인증 또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 수속을 받는데 따르는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05. 질문: 아포스티유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답변: 2007년 7월 14일부터 시행 합니다.

06. 질문: 아포스티유를 발급을 수 있는 문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나라 공문서와 우리나라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입니다. 공문서는 행정부 각부(처,청 및 위원회 포함), 국회, 법원발행 공문서, 지방자치단체 공문서, 국공립학교(초,중,고) 및 국립대학교 발행 공문서 등 입니다.

사립학교(대학포함), 회사, 단체와 개인의 사문서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07. 질문: 상공회의소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아포스티유의 대상이 됩니까?

답변: 상공회의소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 아포스티유의 대상이 됩니다.

08. 질문: 우리나라 공문의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외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번역문에 대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서는 자국내에서 번역되고 자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번역문만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민원인은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기 전에 번역문을 제출받을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공증받은 문서를 인정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09. 질문: 아포스티유는 어디에서 발급합니까?

답변: 외교통상부 별관 1층 영사민원실에서 발급 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통상부 별관 Korea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로 오시면 됩니다.

10. 질문: 우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변: 예, 가능합니다. 다만 반송용 우표, 수수료 등을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 구비 서류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통상부 별관 Korea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앞

11. 질문: 아포스티유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답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서 (영사민원실 비치)
2.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3.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수수료

12. 질문: 아포스티유 발급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답변: 외교통상부 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매1건당 500원입니다.

13. 질문: 미국처럼 국토가 넓은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가 우리나라에 제출할 미국 공문서에 대해서 미국의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답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문서는 국무부(워싱턴) 에서 발급하며 주(state)의 공문서나 공증인의 공문서는 각 주 정부 국무부 (secretary of state)의 인증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거주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4. 질문: 아포스티유 협정이 발효된 후 재외공관의 주재국 공문서확인(영사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이후에도 협약 가입국에서의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의 주재국 공문서 확인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단, 외교통상부는 아포스티유 협약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약 발효일로부터 1년간 긴급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서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주재국 공문서확인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협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공문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재외공관공증법상의 주재국 공문서 확인(영사확인)이 계속 운영됩니다.

15. 질문: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는 인감 위임장에 대해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았는데 7.14 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동이 없습니다.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영사확인 필요문서는 국내행정부처에서 업무 처리상 필요로 하는 문서이므로 현재와 같이 시행됩니다.

16. 질문: 해외거주 동포가 대리인을 통해 한국내에서 일정한 법률행위(부동산 매매등 재산처분)를 하려면 위임장을 만들어야 하는 데 이런 경우에도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합니까?

답변: 위임장은 현재와 같이 우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사서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7. 질문: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외교통상부)에서는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에 대해 무엇을 심사 합니까?

답변: 공문서를 발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관인 또는 공증인의 인장과 서명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며, 공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18. 질문: 아포스티유 서식은 나라마다 다릅니까?

답변: 아니요, 아포스티유 서식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19. 질문: 재외동포가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출생, 사망 등을 신고할 때 외국병원발행 출생증명서 등에 대해 거주국가의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영사에게 제출해야 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출생, 사망 등 호적관련 사항 등을 영사에게 신고할 때는 병원발행 출생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20. 질문: 협약가입국 국가(예: 일본) 국민과 결혼시 협약가입국 신분관리 관청에서 요구하는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1. **질문:** 아포스티유에 대한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인터넷은 www.0404.go.kr 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02) 2100-7500 또는 02) 3210-0404로 문의하시거나 주한공관 또는 외국 주재 우리 공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